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5. 21 선고 2024가단2025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

담당변호사 최단비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4. 16.

판 결 선 고 2024. 5. 21.

주 문

1. 피고들과 D(E생)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 명의 근저당권에 관하여

2021. 4. 16.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
2. 피고들은 F에게 위 제1.항 기재 확정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3. 피고들은 D에게 별지목록 기재,

가.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. 4. 16. 접수 제87405호로
마친 각근저당권이전등기의,

나. 제3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. 4. 16. 접수 제56098호로 마친
근저당권이전등기의,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

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(자백간주) 피고들과 D 사이의 주문 제1항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F에게 확정채권양도계약의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하며, 피고들은 D에게 주문 제3항과 같은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위 피고는,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주채무자인 G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이다. 그런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는데 원고는 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. 4. 22. 주채무자인 G의 예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G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켰으므로(갑 3호증) 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안홍준

별지